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공포, 2023.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준용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

나.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제11조제2항 및 제4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되,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다.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제11조제5항 및 제6항)

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제16조제1항제11호)

관할 지정장 등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에 상이등급 심사 의뢰 추가

마.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별표3의2)

생계지원금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수당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같은 영 제14조”를 “같은 영 제10조의제4항, 제13조의2, 제14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당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수당등(이하 이 조에서 “환수수당등”이라 한다)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

을

2. 기간: 환수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상이등급”을 “상이등급 심사의 의뢰, 상이등급”으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7호의2, 제19호의2,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19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

22의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22의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 ----- ----- ----- ----- ----- ----- ----- ----- ----- <u>같은 영 제10조제4항, 제13조의 2, 제14조</u> ----- . -- ----- ----- ----- ----- -----.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당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당

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대상 수당등(이하 이 조에서 “환수수당등”이라 한다)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환수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

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
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
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
하며,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
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
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
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
수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
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

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
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
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
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
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수당
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
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
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
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

<신 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 10. (생략) 11.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u>상이등급</u>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2. ~ 30.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u>상이등급</u> <u>급 심사의 의뢰, 상이등급</u> ----- ----- 12. ~ 3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보상정책과	(044) 202 - 5420
등록관리과	5438